

제228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산림
야외 정자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5월 9일

여수시장

2023.5.9



여수시 조례 제1888호

붙임 여수시 야외 정자 설치 및 관리 조례 1부

여수시 야외 정자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외 정자의 효율적인 설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휴게 공간 제공 및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외 정자”란 주민의 휴게 공간 제공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하였거나, 설치예정인 야외 정자(개인 또는 단체가 기부 채납한 야외 정자시설 포함)를 말한다.
2. “이용자”란 야외 정자를 사용하는 주민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야외 정자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서 건설과를 말한다.
4. “관리부서”란 야외 정자를 마을회관, 임야, 공원, 하천 등에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들에게 휴게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야외 정자를 설치·관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시장 등이 공공목적으로 설치한 야외 정자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관리되는 야외 정자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제5조(관리주체) 야외 정자의 관리주체는 야외 정자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관리부서의 장이 된다.

제6조(설치장소) ① 야외 정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한 마을의 공공장소(경로당, 마을회관, 공원, 쉼터 등)

2. 여수시 또는 마을 공동소유로 된 장소. 다만, 설치예정 장소 소유주가 타인 또는 타기관일 경우에는 당사자 및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설치할 수 있다.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문화재 보호구역, 하천부지, 산지, 도로부지, 공원구역 등 개별법에 따라 관리 중인 부지에 야외 정자를 설치할 경우에는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③ 야외 정자 설치로 인해 공공장소(경로당, 마을회관, 공원, 쉼터 등)의 이용 및 통행에 안전사고의 위험이 예상될 경우에는 설치할 수 없다.

제7조(설치기준 등) ① 야외 정자를 설치할 때에는 야외 정자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현지 조사 및 검토 후 설치한다.

② 야외 정자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주로 한다.

③ 야외 정자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안내문)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 정자에 별표의 시설 안내문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9조(유지관리) ① 시장은 야외 정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총괄부서 및 관리부서를 지정하여야 하며, 관리부서는 야외 정자를 설치 또는 철거 완료 후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매년 야외 정자의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 정자의 파손 또는 이상 발견 시 지체 없이 보수하여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유지관리의 위탁) 시장은 야외 정자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영조물배상공제)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 정자 이용 시에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야외 정자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